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(대표발의: 정혜경 의원)

의안 번호	20-3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5. .

발 의 자 : 정혜경, 김기석, 김종선
김진천, 장덕준

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상위법 조문이 삭제(2017.1.28.시행)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상위법 근거 삭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

3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4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입법예고: 2020. 5. 13. ~ 5. 17.

6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